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 2269 호
- 다. 발의일자 : 2024. 10. 16.
- 라. 회부일자 : 2024. 10. 18.

2. 제안이유

- 조직 개편사항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직무 대행 정비 (안 제10조제2항, 안 제11조제2항)
- 나. 위원회 서면심사 구체화 근거 명시 (안 제12조제1항)
- 다.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인용조문 현행화 (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
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2. 8. 11. ~ 9. 22.)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원안 참조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시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직무·심의 방법 등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10조 ~ 안 제12조, 안 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u>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u>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u>재난안전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u>,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자로 한다</u>.</p> <p>1. 당연직 위원은 <u>서울특별시</u> 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장</p> <p>2. 위촉직 위원은 건설공사 분야에 <u>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u></p> <p>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u>위촉</u>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p> <p>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u>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12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대상자가 정해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u>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u>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u>위원장</u> -----.</p> <p>② ----- <u>건설기술정책관이 맡고</u> ----- ----- <u>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p> <p>1. ----- <u>위원:</u> -----</p> <p>2. ----- <u>위원:</u> ----- <u>관련 경험</u> ----- ----- <u>사람</u> -----</p> <p>③ ----- <u>임명 또는 위촉</u> -----.</p> <p>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직무를 수행</u> ----- ----- <u>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u> -----.</p> <p>제12조(위원회 심의) 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u>심의·의결</u> ----- ----- <u>할</u> -----.</p> <p>1. <u>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u></p>

<신 설>

②·③ (생 략)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조항 이외의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의 건설업자에 하도급 - 2인 이상의 건설업자에 하도급 ○ 위반행위 근거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면허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 위반행위 근거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한때 ○ 위반행위 근거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제4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계약 허위통보 ○ 위반행위 근거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 위반행위 근거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6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5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4호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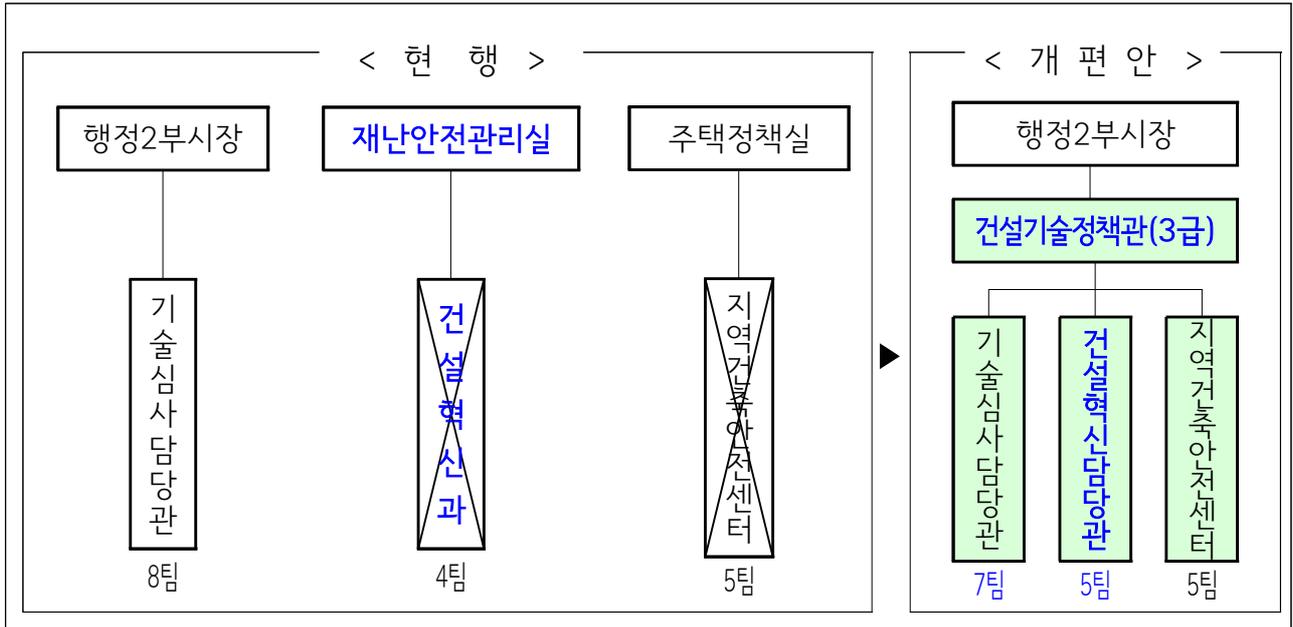
위 반 행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조항 이외의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의 건설업자에 하도급 - 2인 이상의 건설업자에 하도급 ○ 위반행위 근거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록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 위반행위 근거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 위반행위 근거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계약 허위통보 ○ 위반행위 근거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 위반행위 근거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6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 개정안 주요 내용검토

- 안 제10조제2항은 위원장의 직위를 현행 “재난안전관리실장”에서 “건설기술정책관”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년 7월 1일자로 서울시가 조직개편(〔표〕 참조)에서 건설기술정책관을 새로이 신설하고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업무를 기존 재난안전관리실(건

설혁신과)에서 건설기술정책관(건설혁신담당관)으로 이관([표] 참조)함에 따른 것임.

[표] '24.7.1일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 및 건설기술정책관 조직개편 내역



- 다음으로, 안 제10조제1항과 안 제11조제2항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부위원장” 직책을 삭제하면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 대행자를 현행 “부위원장”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이는 최근 3년간 위원회 심의 건수가 총 1건¹⁾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직책을 간소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실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 운영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1) 최근 3년간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 개최 현황

심의일자	신고대상(발주청)	신고 내용	처리	포상금 지급
'24.6.4.	그린과킹 조성 (마포구청)	무등록 하도급	과징금 처분(9백만원) ('24.1.15.)	대상 (63만원 지급)

- 그리고, 안 제12조제1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에 대해,
-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두 개의 호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기 즉,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와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로 규정 함으로써 서면심의가 남발되는 것을 예방하는 한편,
- 서면으로 심의는 하되 의결까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혼란을 안고 있는 현행을 보완코자 제12조제1항 중 “서면으로 심의”를 “서면으로 심의·의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상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마지막으로, 안 [별표]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위반행위 근거 조항과 관련하여 관련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후속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